

# 과서에 나타난 반역과 탄압

위서의 사회사 — 10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왕조시대 언론기능의 제도적 장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상소제도다. 상소는 백성의 뜻을 정치과정에 투입시키는 기능이지만, 관리나 양반계층에 국한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공적 언로가 막힌 사람들은 과서·방서·투서·벽서 등 비합법적인 방식에 의지해 자신들의 뜻을 세상에 알렸다. 이들 익명의 발언들은 허위 사실과 모함의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배와 피지배 또는 개인간의 사원(私怨) 관계에서 익명을 통한 과서·방서·투서·벽서 등이 나타난다. 요즘처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도 가끔 정계나 관가에 나도는 '괴문서' 역시 철저한 익명성으로 인해 허위사실과 모함의 방편으로 이용된다.

특히 21세기 언로(言路) 미디어의 총아로 등장한 인터넷은 그 익명성 때문에 온갖 의견과 비방과 모함이 넘친다.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쓰는 글이란 과장되거나 허위사실, 상대에 대한 음해가 섞이게 마련이다. 현대과학 문명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기능의 한 단면이다.

##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 과서

언론자유가 보장되기 전, 그러니까 봉건전제 시대의 공식적인 언로 기능에는 왕이나 관리의 비정을 고발하고 백성의 억울한 일을 임금께 직접 호소하는 신문고 제도를 비롯해 성균관 유생들이 국왕의 전횡을 비판하는 유소(儒疏) 제도가 있었다. 또 지방관리들의 횡포와 전단을 견제하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민정에 반영하는 향소(鄕所) 제도도 마련됐다.

왕조시대 언론기능의 제도적 장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상소제도다. 상소는 백성의 뜻을 정치과정에 투입시키는 기능이지만, 관리나 양반계층에 국한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상이 언로의 공적인 기능이라면, 과서·방서·투서·벽서 등은 비공식적인 방식이었다. 전자가 합법적인데 비해 후자는 비합법, 즉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됐다. 한마디로 실명의 언로가 합법적

이라면 익명의 언로는 불법적이었다. 한국사에서 익명서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한 형태의 사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신라 진성왕 2년(888)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시정(施政)을 비난하는 글을 써서 조로(朝路)에 게시하였다. 왕명으로 사람들을 수색하였으나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다”(《삼국사기》 권 11 신라본기 제 11 진성왕 2년 춘 2 월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과서는 조선후기에 성행한 하나의 투서 방식이다. 과서를 사전에는 “국가에 반역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모함할 때에 공문, 성문, 관청의 문 같은 곳에 이름을 숨기고 게시하는 글”로 풀이한다. 과서의 과(掛)는 ‘걸다’는 의미로 ‘글을 걸다’는 뜻으로 새긴다. 자의적으로 ‘글을 던지다’는 의미에서는 투서(投書)와 비슷하지만 “어떤 사실의 내막을 적어서 익명성으로 요로(要路)에 던져 넣는 글”이란 뜻에서 차이가 있다.

## 《목민심서》에 나타난 과서와 투서

조선 중기부터 과서가 특히 심했다. 삼정(三政)이 문란해지고 탐관우리가 날뛰면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들었다. 당연히 백성들이나 야심가, 음모가들에 의해 과서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무릇 과서와 투서가 반역에 속하여 놀라운 기미가 있을까 염려되는 경우에는 큰 것은 영문에 달려가 감사와 직접 의논할 것이요, 작은 것은 수리(首吏)나 수향(首鄕)을 보내서 감사에게 보고할 것이다. 혹은 고을 사람들이 서로 모함하거나 아전들이 서로 무고 날조하여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은 즉각 불태워 감히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혹은 그 말하는 바가 비록 사사로운 원한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거가 있고 중요한 일에 관계된 것은 조용히 살펴서 그 싹과 맥락을 찾아야 한다.”

조선왕조 특히 숙종시대에 과서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재위기 간(1675~1720) 동안에 6차례의 과서사건이 일어났다. 숙종 5년 7월 한성부의 관아 담벽과 민가에서 동시발생적으로 나타난 과서사건이 《비변사등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우의정 오시수(吳始壽)가 아뢰기를 조래에는 인심이 깨끗하지 못하여 차마 듣지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로써 여러 신하들의 죄목을 꾸미고, 익명서를 만들어 길가의 민가에 붙이거나 관가의 담장에 붙이거나 하여 널리 퍼뜨리려 하니 백성들이 일시에 모여들어 다투어 적어 가기를 마치 과장(科場)의 문제를 베풀어 가듯 합니다. 그래서 도처에 전파하고 있으니 일의 해괴함이 무엇이 이것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 숙종 때 대청외교 비난한 패서 나돌아

숙종 37년 4월 30일 서울 영은문에 한 장의 패서가 나붙어 조정을 발각 뒤집어놓았다. 당시 대부분의 패서는 이른바 ‘부도지설’(不道之說)로 일축됐지만, 이 패서는 조선의 대청(大清) 외교를 격렬히 비난하면서 조선은 하루빨리 청을 공격해 명(廳明)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특이한 내용이었다.

이 패서는 다음날 판윤 황 흠에 의해 승정원에 전달되고 숙종에게 보고됐다. 그만큼 내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패서가 불태워지거나 찢겨 없어진 데 반해 이 패서는 《숙종실록》에 그대로 전한다. 장황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개 듣건대 오랑캐를 물리치고 악인을 제거하는 것은 임금의 큰 책무로 사양할 수 없으며, 먼저 알린 연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왕이 된 자의 성대한 절차이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랑캐(淸)의 운명은 백년의 오랜 궁핍을 만났고, 천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이 다시 창성할 운세이니 비유하면 일월(日月)이 사라졌다가 다시 밝아

“조선 중기부터 패서가 특히 심했다. 삼정(三政)이 문란해지고 탐관오리가 날뛰면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들었다. 당연히 백성들이나 야심가, 음모가들에 의해 패서가 나타났다. 조선왕조 특히 숙종시대에 패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재위기간 동안에 6차례의 패서사건이 일어났다.”

지고 절기가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다. 지금 오랑캐가 일시적으로 우(牛), 양(羊)의 힘을 빌어 백대를 이어온 문물의 나라를 침범하여 우리의 종조(宗祖)를 짓밟고 황통(皇統)을 빼앗았다. (중략) 국토는 비록 작더라도 천리의 땅을 가지고서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도다. 창과 방패를 닦고 갑옷을 수선하여 이끌 군사를 정비하여 단속하고, 말 먹이를 쌓고 군량을 마련하여 일찍 고말(犒秣 : 군인과 군량)할 기구를 관비하여, 돈독한 예를 크게 닦고 알리는 사령을 급히 위촉해야 할 것이다. 아! 혹은 이 나무를 건너 경계를 지나는 날에 보내는 의절을 어기지 않는다면, 뒤에 분봉(分封)하고 공훈을 정할 때에 어찌 절충한 효험이 없으랴. 만일에 혹 다른 생각을 망령되게 일으켜

스스로 그 허물을 부르게 되면 비록 궁지에 몰린 호(胡)에게 의지하더라도 그 이로움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삼한이 대려(大呂 : 주나라 큰 종의 이름)보다 중할 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9세의 깊은 원수를 보복할 기회가 이 한번의 거사가 있으리니 아직도 남아 있는 방패와 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자가 내조(來朝)하기를 기다리겠노라. 천조대원수(天朝大元帥) 격(檄).”

### 익명 투서자 잡히면 사형

숙종은 ‘익명서정죄사목’(匿名書定罪事目)을 반포해 패서 등 이른바 ‘익명서’에 대해 엄격히 문책했다. 다음은 ‘익명서정죄사목’의 요지다.

“대명률(大明律)에 익명서를 정죄한 조항은 일체를 잘 지켜 행하고 있으나 말세의 인심이 깨끗하지 못하여 익명서를 내건 자가 줄을 잇고 있다. 이는 대체로 얼마 전 파자교에 방을 붙인 일이 마침 강도(江都)의 흉서 죄인을 체포하지 못하였을 때에 나온 것이어서 순전히 덮어둘 수만도 없어 일단 수거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죄를 입은 것은 방을 붙인 혐의를 받는 자들뿐이고 방문에 이름이 오른 자는 끝내 묻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간사하고 불명한 무리들이 다시 먼지처럼 거두어 보기를 바라는 이러한 습성이 늘어나니 일의 한심스러움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간특한 악습을 근절하려면 상법(常法)만 준용해서는 안되겠으므로 7월 27일 탑전에서 결정한대로 새로 반포할 사목을 마련하여 아래에 기록한다.”

이 기록을 통해 패서와 익명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게 된다. 숙종 때 반포한 ‘익명서정죄사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비변사등록》 숙종 5년 8월 3일조).

1. 익명서를 투서한 자는 본율(대명율)에 의거하여 교형(絞刑)에 처한다.
  1. 무릇 패서한 장소가 대로변이면 부근에 사는 사람이, 관청이면 수직자가, 개인 가옥이면 집 주인이 즉시 불살라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사람들이 모여 읽게 한 자는 익명서를 투서한 자보다 1등을 감하여 사족(士族)은 유(流) 3천리에 처하고, 상한(常漢)은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도록 한다.
    1. 익명서의 내용을 전파하거나 익명서를 가지고 관사에 들여보낸 자는 역시 익명서를 투서한 자보다 1등을 감하여 정죄한다.
      1. 관사에서 받아 심리한 자는 본율대로 장 1백에 처한다.
 (이 글을 쓰면서 이상배씨의 《조선 후기 정치와 패서》를 많이 참고했다.)■